

April 1, 2019

Legal Update

지식재산권 분야 최근 대법원 판례 해설 (2019. 1.~3.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대법원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사건에서 여러 건의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에서는 최근 선고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선별하여 그 의의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방법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소진이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마찰이동용접 또는 마찰교반용접에 관한 방법발명(이하 “이 사건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소외 A회사와 이 사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A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 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종래부터 대법원은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된 당해 물건발명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발명 제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 왔으나(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방법발명에도 동일한 소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5. 2. 선고 99나593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Quanta 사건(Quanta Computer, Inc., et al. v. LG Electronics, Inc., 128 S. Ct. 2109)에서 방법발명이 어떤 물건에 실질적으로 구현된(substantially embodied) 경우에는 그 물건의 판매로 해당 방법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며, 특허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물건에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용도 이외의 합리적인 비침해 용도(non-infringing use)가 없을 것, ② 당해 물건이 방법발명의 본질적 요소(essential feature)로 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 소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해 특허권 소진이 적용되어 그 효력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방법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제한되기 위한 ‘실질적 구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에서 실시한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에 있어 ‘다른 용도가 없는지 여부’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Quanta 사건에서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은 특허권 소진의 법리를 방법발명에 도입함으로써 실시권자 및 방법발명을 구현한 물건의 양수인 등의 자유로운 실시를 보장하여 특허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특허 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발명의 효력 제한에 관한 기존 하급심 판결의 입장을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발명을 재현해내기 위한 ‘실질적 구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간접침해 법리에서 ‘타용도 유무’의 판단 법리를 차용하였는바, 향후 실제 사안에서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에 위 간접침해 법리의 적용 사례를 축적하여 방법발명의 특허권 효력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시권자도 등록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밝힌 사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는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pool)에 대상특허의 라이선시(licensee)로 등록한 자이며, 원고는 상기 표준특허풀에 라이선서(licensor)로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자로서, 양 당사자는 대상특허와 관련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였습니다. 즉,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특허가 표준특허풀에서 제외됨으로써 피고는 별다른 제약 없이 대상특허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있었는바, 이에 피고는 대상특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과 원심인 특허법원은 모두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 당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실시권자인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밝혔습니다.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시사점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권자가 등록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라는 해석하에 실시권자의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이후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거나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후78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후74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후75 판결 등).

이와 같은 혼란이 초래된 원인은 대법원이 이해관계인을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아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는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미를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그와 같은 정의에 따를 때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 및 실시권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이유로, ① 실시권자는 실시가 허여된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실시로 지급의무 등을 면할 수 있고, ②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시권자로서는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의 심사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를 심판절차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심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통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의 당사자 적격으로 심사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쟁송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남용하여 특허제도의 안정을 해하면서까지 부당한 이익 내지 특권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시권자라고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무효심판에 있어 실시권자가 가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살펴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가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본 쟁점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정리하고 법 목적에 부합하는 특허무효심판제도의 운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당구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는 내용의 강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피고가 제공한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일반인이 이를 재생·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관해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방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방조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나. 대법판결의 요지

상고심인 대법원은 피고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뒤,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따라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가 피고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 기재하고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2) 피고가 게시물 특정을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3)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물을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원본 파일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4) 원고의 요청서에 기재된 카페 내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게시물 중에 어떤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그 내용을 일일이 재생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동영상에 있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침해물의 특정 없이는 과도한 비용과 기술적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점, (5) 피고는 원고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관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삭제하고 경고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해온 점 등의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O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해 종래부터 대법원은 OSP의 일상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구가 있는 등으로 침해물의 게시를 OSP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OSP의 방조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요건 중 “권리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면서 그 특정의 정도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게시물 URL까지 특정하여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수준의 특정이 요구되는 이유를 영상저작물의 객관적 속성에 비추어 OSP의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타당하게 판시하였습니다.

OSP의 책임 제한에 관한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IP 주요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OSP의 저작권 침해책임의 근거로 기여책임 내지 대위책임의 법리를 발전시켜 온 동시에 DMCA에 의해 신설된 연방저작권법 제512조에서 4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 침해 면책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 “권리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방조책임 성립의 판단에서 고려하는 점은 미국의 OSP 면책요건인 ‘통지 및 차단조치’에 관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에서 OSP에게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탐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제15조), 단순 도관 형식(mere conduit),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의 각 서비스 유형별로 소정의 면책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제12조 내지 제14조), 다만 미국과 달리 통지 및 차단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서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하고 있는 면책요건 중 하나인 “침해의 인식가능성”은 대상판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판례들이 권리자로부터의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차단·삭제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OSP의 구체적인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참조하고, 그러한 요구가 없었더라도 침해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럽의회는 2019. 3. 26.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무 등 O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SM지침)’을 최종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OSP의 면책범위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DSM지침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통해 OSP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 법 제3조는 침해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당해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없었거나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FTA에 따라 2006년에 DMCA와 유사한 내용의 OSP 책임제한 규정을 저작권법 제102조에 도입하였는데, 이번 판결은 OSP의 저작권 방조책임의 국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할 때 법원이 그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요소들과 그 의미를 실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동영상 형식의 저작물을 비롯해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OSP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영업비밀침해의 금지기간 설정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가. 사실관계

세포치료제 및 콜라겐을 이용한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종업원이 신청인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 콜라겐의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 파일을 유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의 전 종업원과 종업원이 설립한 경쟁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하는 한편으로 이와 별도로 본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심인 원심의 심문종결 당시 위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에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신청인 회사로부터 유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출원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던 사정,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시간과 피신청인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는 그 유출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설시는 다음과 같은 방론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 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룰 수 있다.”

다. 시사점

대상판결은 영업비밀이 그 비밀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영구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을 벗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목적에 따른 적정한 보호기간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한시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기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는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위 방론 설시를 통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한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아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고 판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간이 영구무한인 것은 아니고 추후 가처분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보호기간의 도과에 관한 사정이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어서는 침해금지청구가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명령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변론(심문) 종결 시점에 계쟁 자료 내지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금지기간의 종기를 특정할 필요 없이 침해금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 영업비밀성 상실 등의 사유로 당해 침해금지 명령의 근거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 02-316-4041

✉ bklim@shinkim.com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 02-316-4055

✉ shim@shinkim.com



류시원
변호사

☎ 02-316-1622

✉ swryu@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
